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등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창원·사천·밀양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등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전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판례 : 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판례 :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기소 중인 사실에 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함(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주46판결)

그런데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 훈계 또는 주의 등으로 처분 하였다.

소속	직급	성명	수사기관 통보내용	행정기관 처분 내용	
				처리일	처리결과
창원시	○○○○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500만원)	14.4.11	훈계
	○○○○*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100만원)	15.3.24	훈계
	○○○○*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100만원)	15.3.24	훈계
	○○○○*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100만원)	15.10.23	훈계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70만원)	16.1.7	주의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70만원)	16.1.7	훈계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70만원)	15.12.31	주의
	지방○○*급	○○○	재물손괴(차량파손) (기소유예)	16.7.28	훈계
사천시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100만원)	14.2.21	내부종결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70만원)	14.9.3	내부종결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70만원)	14.8.29	주의
	지방○○○○○	○○○	도로교통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70만원)	14.10.21	주의
	지방○○○○○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기소유예)	14.12.26	주의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100만원)	15.7.9	주의
	지방○○○○○	○○○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유예)	15.6.15	주의
밀양시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14.4.25	훈계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500만원)	14.4.17	주의
	지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처분, 벌금 100만원)	14.4.17	주의

※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사천시장, 밀양시장은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징계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